



축산발전사업계획 및 실시요령(양계)

—농림수산부—

축산경영개선을 위한 경 영지표

○가족노동력 중심의 전업농가 육성

축산	한우	젖소	돼지	닭
규모	10두 내외 (부업형유지)	착유우 30-40두	모돈 50-100두	2-3만수

- '95년까지 전체 사육두수의 50%이상을 전업
농가에서 사육

○축산물 생산비 절감('90년)

	한우 (400kg)	우유 (1kg)	돼지 (90kg)	육계 (1kg)	계란 (10개)
	천원	원	천원	원	원
경영비	1,329	189	93	850	419
생산비	1,768	376	111	968	486

- '95년까지 30% 절감

1. 축정과

가. 양축자금 지원

(1) 지원규모

(가) 조달 및 운영규모

		'92(A)	'91(B)	증감(A-B)
조	재정자금 (신규지원)	600억 원 (200)	400 (100)	200 (100)
	한은차입금	880	720	160
달	축협자금	1,320	1,080	240
	계	2,800	2,200	600

(2) 지원방향

(가) 자금의 용도

○축산농가의 사료구입비, 동물약품구입비 등 가
축사양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하여 단기지원

(나) 용자조건

① 용자대상: 가축사육 여건을 갖춘 양축농가

② 용자기간

- 대출기간은 1년이내로 함.
- 대출금 상환연장이 불가피한 경우는 당초 약정기간을 포함 1년 6개월 범위내에서 연장가능

③ 금리 및 이자징수

- 금 리 : 년 5%
- 이자징수 : 대출금의 이자는 원금상환일에 후취

④ 채권보전

- 신용대출을 원칙으로 하되, 신용대출한도를 초과하는 대출은 담보대출(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포함)로 함.

(다) 용자한도 배정

① 시·도별, 시·군별 대출한도는 다음 각호를 참작하여 배정하되, 재해등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 조정가능

- 양축가수
- 양축규모
- 축산자금 지원실적
- 기 타

② 시·군단위에서의 지역별 대출한도는 다음의 각호를 참작하여 배정하되, 재해등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 조정가능

- 양축가수
- 양축규모
- 양축자금 지원실적
- 기 타

(라) 양축자금 용자

① 대출대상자의 추천

◦대출대상자는 축산계장이 양축가별 양축규모 및 자금사정을 감안하여 대상자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천함.

◦축산계가 조직되지 아니한 지역은 축협 대의원선거규정에 의하여 선거구별로 선출된 대의원이 상호 협의하여 추천함.

② 가구당 지원액

- 가구당 지원액은 4,000천원 이내에서 지원

③ 대출대상자 확정 및 공개

◦대출대상자는 축산계장 또는 대의원이 추천한 자 중에서 선정하되 양축자금의 지원을 받지 못한 양축가를 우선 지원함으로써 편중 지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용자대상자 선정 결과는 공개하여야 함.

④ 대출금의 지급

◦대출금은 출자금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공제하지 못하며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함.

◦대출금을 지원한 때에는 용자대상자를 추천한 축산계장 또는 대의원에게 통보하여야 함.

(마) 양축자금의 생산자금화

◦양축자금의 소비자금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통장으로 지급

◦사채를 주고 있는 양축가 또는 자체조달이 가능한 양축가에 대하여는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제외 또는 지원액을 조정하여 축산경영부족 양축가를 중점 지원토록 함.

(바) 특수목적 양축자금(50억원)

- 재해로 인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가축사양비·시설복구비·자축구입비 등에 지원
- 지원기준은 별도 시달하는 요령에 의함.

나. 수입개방에 대비한 축산농가해외연수

(1) 목적

◦전문 축산농가의 해외연수를 통한 새로운 경영능력 배양과 양축의욕 고취로 수입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

◦선진 농업국의 축산기술 도입·활용으로 생산성 및 국제경쟁력 제고

◦국내외 축산여건변화에 대응한 전업축산농가의 육성과 축산업구조조정시책의 효과적 추진으로 축산발전에 기여

(2) 분야별 연수대상국 및 계획

분야별	연수대상국	연수계획 인원	연수 시기	연수기간	연수 대상자
육우	일본·미국	30명 (2개반)	9월	14일간 (2주간)	한우농가
낙농	캐나다	30(2)	9월		낙농가
양돈	영국·덴마크	15(1)	6월		양돈농가
양계	일본·화란	15(1)	10월		양계농가
계		90(6)			

(3) 연수대상자 자격요건

구분	자격요건
축산농가 (육우·낙농·양돈·양계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수분야의 축종을 다음기준 이상 직접자영 하는 전업축산농가(전업농)·축산지도자 또는 축산영농후계자 번식우·비육우 30두, 착유우 20두, 번식돈 50두·비육돈 500두, 산란계 20천수·육계 10천수 이상 농업계학교(농고·농대)를 졸업하고 5년이상 축산업의 영농경력이 있는 자 지역 축산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 중 해외경력이 전혀 없고 연수후 5년이상 관련 산업을 계속 영위할 연령이 31세이상 45세이하의 청장년인 자(이상 공통요건)

다. 축산진흥대회 개최

- 축산농가의 양축의욕 고취와 적정 생산유도로 안정적인 축산물 생산공급 및 농가소득 기여
- 우량가축을 선발·종축으로 활용하여 가축개량 도모
- 축산업의 구조조정 촉진과 생산성 향상에 의한 국제경쟁력 강화

라. 축산관측사업

- 축산관측제도를 시장개방 대응체제로 개편하여 불안한 양축농가에 장·단기경영지표를 제공하고
- 축산물생산의 사전적 조절과 가격안정유도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코자 '9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축산관측제도 개선사업을 내실있게 추진코자 함.

2. 축산경영과

가. 경영개선

(1) 축산경영개선을 위한 경영지표

축종	한우	젖소	돼지	닭
규모	10두 내외 (부업형유지)	착유우 30-40두	모돈 50-100두	2-3만수

- '95년까지 전체 사육두수의 50%이상을 전업농가에서 사육

○ 축산물 생산비 절감('90년)

	한우 (400kg)	우유 (1kg)	돼지 (90kg)	육계 (1kg)	계란 (10개)
	천원	원	천원	원	원
경영비	1,329	189	93	850	419
생산비	1,768	376	111	968	486

- '95년까지 30% 절감

(2) 축산경영 안정을 위한 주요추진사항

- (가) 대기업의 축산업참여금지로 양축농가 소득보호
- 대기업자본의 축산참여금지로 중소규모 양축농가 보호
 - 축산업참여금지 대상기업
 - 중소기업사업조정법에 의한 대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
 - 은행법에 의하여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계열기업군
- (나) 축산업 등록·허가 업체를 통한 사육조절
- 축산업 등록 및 허가기준
 - 축산업등록·허가기준 강화로 수급조절 유도
 - 수급조절 필요시 감축명령, 초과사육 부과금

구분	양 돈 업	양 계 업
등록	모돈 : 100-499두	산란계 : 3만수이상 육 계 : 1만수이상 산란용중병아리 : 1만수이상
허가	모돈 : 500-1,000두이하	-

부과등 조치

(다) 부회장의 입란 및 병아리 생산실적조사 및 홍보

- 매순기별 부회실적 전산보고
- 정확한 보고 및 보고기일 엄수
- 부회실적을 집계 분석하여 사육전망 홍보
- 시·도 및 생산자단체를 통한 자율홍보

(3) 축산업구조개선 및 경쟁력제고를 위한 사업추진

(가) 가축(돼지·닭) 계열화사업

① 목적

- 양축농가의 일정소득 보장으로 안정적인 축산 경영 도모
- 생산비절감 및 유통단계 축소에 의한 소비자 보호

○계열화사업자의 다양한 제품개발 및 소비확대로 유통구조 개선

② 추진방향

- 계열화사업자는 계열화생산사업에 필요한 종돈장·종계장·도축장(도계장), 가공공장, 부회장 등을 확보토록 육성

○계열화사업자는 계열농가에 생산요소(자축, 사료, 약품 등) 및 사양기술 제공

○계열화사업자는 생산된 가축을 전량 책임 수집하여 직접 처리·가공후 판매

○계열화사업자와 농가의 계약에 의한 생산사업으로 추진

③ 사업계획

- 사업주체 : 농림수산부
- 사업량 : 8개소

○지원대상 : 돼지, 닭계열화 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

○사업기간 : '92~'93년(2년간)

○사업비 : 400억원

○지원내역

사업량	단가	사업비	사업비내역		
			용자	자담	계
개소 8	백만원 5,000	백만원 40,000	28,000 (70%)	12,000 (30%)	40,000 (100%)

*축종별 사업내용에 따라 사업비 조정 지원이 가능함.

-재원 : 농어촌발전기금

-용자기간 및 금리 : 3년거치 7년상환, 연리 8%(연 1회 후취)

④ 세부실시요령

추진내용	주관(협조)
㉞ 지원대상자선정 : 농림수산부장관	농림수산부, 도지사, 축협중앙회
㉟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일반계열화사업자는 계열화 사업자 지정 및 지원신청일 6개월 전부터 계열화 사업자 규모의 20%이상 실적이 있어야 함. -축산협동조합법에 의한 양돈, 양계업협동조합은 20%이상 실적이 없어도 가능 ○계열화사업 대상가축 및 사업자규모 -돼지 : 30천두이상(계약농가당 : 500-2,000두 수준) -닭 : 1,000천수이상(계약농가당 : 2-5만수 수준) ○계열화사업 방법 -계열화사업자는 농가와 계약에 의해 자재(어린가축, 사료, 약품 등)를 공급하여 생산된 가축을 수집하여 자체에서 처리·가공 및 판매를 전담하고 -계약농가에는 사육수수료 지급을 원칙으로 하는 완전계열화 사업으로 추진 ○계열화 사업자의 시설확보 -계열화사업자는 사업추진을 위한 기본 시설인 돼지의 경우 도축장, 가공공장, 판매장을 육계의 경우 도계장, 부회장, 종계장을 산란계의 경우 계란집하장,	

추진내용	주관(협조)
<p>부화장, 종계장을 '93년말까지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함.</p> <p>㉔ 선정절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계, 양돈조합과 수출업체, 육가공 및 처리업체, 사료업체, 축산업체 등 계열화 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일정지역 단위로 계열농가를 확보하고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도지사에 신청 ○도지사는 계열화사업 신청자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한후 신청자가 계열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 의견서와 지도계획서를 첨부하여 농림수산부장관에 신청 ○농림수산부장관은 돼지, 닭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생산자 단체, 농가, 학계, 행정기관 등으로 협의회를 구성하여 협의회에서 도지사가 신청한 사업자의 사업계획서를 심의하여 계열화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업체를 지정하여 지원대상자로 선정 -은행감독원의 여신규제 대상자가 아닌 사업자 <p>㉕ 자금용도 : 종돈장, 종계장, 부화장 및 자축(자돈, 병아리 등)과 사료비 등 자재공급에 사용(단,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처리·가공·판매 시설비에도 사용가능)</p> <p>㉖ 용자조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용자한도 : 사업자당 35억원 이내 ○용자비율 : 사업비의 70%이내 ○용자취급기관 : 축협중앙회 ○용자대상자 : 농림수산부장관이 선정한 계열화사업자 <p>㉗ 재권보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림수산부장관이 선정한 계열화사업 지원대상자에 소요자금의 10% 범위내에서 사업착수 자금으로 우선 용자 조치할 수 있으며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용자취급기관의 여신관리 제규정에서 정한바에 의해 여신관리 ○용자취급기관에서는 계열화사업자의 부동산 담보제공절차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신용보증 보험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시행 	

(나) 축사시설 개선사업

① 목적

○축사시설 자동화에 의한 생산비절감 및 국제경쟁력 제고

○농촌노동력 부족에 따른 인력대체 추진

○축사환경 개선에 의한 위생적인 축산물생산

② 추진방향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축사시설 현대화 및 자동화시설 설치

○기존 부업규모 축산농가를 가족단위 노동력으로 경영이 가능한 전업농가로 육성

③ 사업계획

○사업주체 : 농림수산부

○사업량 : 1,806개소

○지원대상 : 소50두, 돼지2천두, 닭·오리30천수

이하 사육농가

○사업기간 : '92년(1년간)

○사업비 : 903억원

○지원내역

사업량	단가	사업비	사업비내역		
			용자	자담	계
개소 1,806	백만원 50	억원 903	억원 632 (70%)	271 (30%)	903 (100%)

○재원 : 농어촌발전기금

○용자기간 및 금리 : 3년거치 7년상환, 연리5% (연1회 후취)

④ 세부실시요령

추진내용	주관(협조)
<p>㉘ 지원대상자선정 : 도지사</p> <p>㉙ 대상자 선정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50두, 돼지2천두, 닭·오리30천수 이하 사육농가중 축사시설 개선을 희망하는 농가 ○가족계열화사업에 참여중인 계열농가 및 수출용축산물 생산에 관여하고 있는 양축농가를 우선적으로 선정 ○도지사는 사업비 한도내에서 축종별 	<p>농림수산부, 도지사, 축협중앙회</p>

추진내용	주관(협조)
<p>소요시설, 규모 등을 감안하여 사업량을 적의 조정할 수 있음.</p> <p>○ 기지원한 농가에 대한 중복지원은 불가</p> <p>㉔ 대상자 선정절차</p> <p>○ 도지사는 축사시설개선 희망농가의 신청에 의해 사업대상자를 선정후 농림수산부에 보고</p> <p>○ 농림수산부장관은 도지사가 선정보고한 지원대상자 및 사업량을 확정하여 축협중앙회에 통보</p> <p>○ 축협중앙회장은 도별 사업량에 따라 지원자금 배정</p> <p>㉕ 자금용도</p> <p>○ 자동급이·급수시설, 집란시설 및 착유시설</p> <p>○ 환기시설</p> <p>○ 분뇨수거 및 처리시설</p> <p>○ 축사신축 및 기존축사 개축·증축 등</p> <p>㉖ 용자조건</p> <p>○ 용자한도: 농가당 35백만원이내</p> <p>○ 용자비율: 시설비의 70%이내</p> <p>○ 용자취급기관: 축협중앙회</p> <p>○ 용자대상자: 도지사가 선정한 축사시설 지원사업 대상자</p>	

(다) 축산단지 조성사업

- ① 목적
 - 수입개방에 대비한 축산업구조개선
 - 축사시설 부지난 해소와 전업축산농가 시범육성
 - 사양관리 공동체제 구축으로 규격품 축산물생산 및 경영합리화
- ② 추진방향
 - 부업규모 축산을 전업규모로 확대하여 정착축산농가로 육성
 - 이전대상농가의 축사시설 부지확보 및 요수처리시설 공동설치로 축산공해 방지
 - 사양기술 전달 및 공동정보 관리체제로 전환하여 경영기반 확립
- ③ 사업계획
 - 사업주체: 농림수산부

- 사업량: 18개소
- 지원대상: 젓소, 돼지, 닭 사육농가중에서 시범단지를 조성, 입주를 희망하는 농가
- 사업기간: '92-'93년(2년간)
- 사업비: 360억원
- 지원내역

재원별	사업량	단가	사업비	사업비내역			
				보조(지방비)	용자	자담	계
농발기금	8	20	160	8	112	40	160
축진기금	10		200	10	140	50	200
계	18		360	18 (5%)	252 (70)	90 (25)	360 (100)

-용자기간 및 금리: 3년거치 7년상환, 연리5% (연1회 후취)

④ 세부실시요령

추진내용	주관(협조)
㉔ 지원대상단지선정: 도지사	농림수산부, 도지사, 축협중앙회
㉕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 단지규모	
-단지당 10-20농가를 기준으로 하여 젓소는 50두, 돼지는 10천두, 닭은 300천수 이상으로 하여 총사업비 20억원 규모	
○ 농가규모	
-돼지: 농가당 모든 50-100두 사육규모	
-닭(산란계, 육계): 농가당 2-3만수 사육규모	
㉖ 선정절차	
○ 도지사는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축종별 사업대상자와 입주대상자 선정 등 단지 규모를 확정하고 기반시설비 지원을 위한 지방비를 확보한 후 세부추진계획서를 도지사가 직접 수립하여 농림수산부에 제출	
-도지사는 단지당 사업비의 5% 이상 지방비를 확보지원	
-은행감독원의 여신규제 대상자가 아닌 농가	
○ 도지사는 축산단지조성을 위하여 관련	

추진내용	주관(협조)
전문가들로 하여금 협의회를 구성운영 - 축산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의 타당성 조사, 분석, 대상지선정, 입주대상농가 선발 및 농가별 배치 등에 대하여 직 접지도 또는 자문 ㉔ 자금용도: 단지내 축사신축, 자동화시설 및 분뇨처리비 등에 사용 ㉕ 용자조건 ○ 용자한도: 단지당 14억원 이내 ○ 용자비율: 농가당 시설비의 70%이내 ○ 용자취급기관: 축협중앙회 ○ 용자대상자: 도지사가 선정한 축산단 지 입주대상자	

(라) 축산기계화 사업지원

① 목적

○ 축산기계·기구 구입자금의 용자지원으로 양
 축가의 부담경감 및 축산경영의 기계화 촉진

○ 부족한 농촌노동력의 인력대체 및 노동력절감
 에 의한 생산성 향상으로 양축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

② 지원방향

○ 축산기계를 구입하는 양축농가에 기계구입자
 금을 용자지원

③ 사업계획

○ 사업주체: 농림수산부
 ○ 지원대상: 축산기계·기구의 구입을 희망하는
 양축농가

○ 사업기간: '92년(1년간)

○ 사업비: 200억원

○ 지원내역

사업명	사업비	사업비내역		
		용자	자담	계
축산기계 구입비	200억원	140 (70%)	60 (30)	200 (100)

-재원: 농어촌발전기금

-용자기간 및 금리: 2년거치 3년상환, 연리 5
 %(연 1회 후취)

-용자비율: 기종별 구입자금의 70%이내

④ 세부실시요령

추진내용	주관(협조)
㉑ 지원대상자선정: 축협중앙회장 ㉒ 지원대상기종,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선 정절차 및 사업계획심사 등 기타 세부 사항은 축협중앙회장이 별도 추진계획 을 수립 시행할 것 - 축협중앙회장은 세부추진계획 수립시 양축농가에서 직접 기종을 선택하고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 ㉓ 자금용도: 축산기계구입자금 ㉔ 용자조건 ○ 용자비율: 농가에서 구입한 기종별 구 입가격의 70% 이내 ○ 용자취급기관: 축협중앙회 ○ 용자대상자: 축협중앙회장이 선정한 축 산기계구입 실수요자	농림수산부, 축협중앙회

(마) 종계장 시설개선 사업

① 목적

○ 종계장시설 개선으로 종계생산성 향상

○ 종계사양관리 체계 개선으로 우량 병아리 생
 산보급

○ 종계장 인력난 및 시설 노후화를 개선하여 병
 아리 생산비 절감

② 후진방향

○ 종계장의 생산성 저하에 따른 종계 사육시설
 개선 및 자동화 설치

○ 시설개선에 의한 종계·사양관리 체계 개선
 으로 병아리 수급안정

③ 사업계획

○ 사업주체: 농림수산부

○ 사업량: 10개소

○ 지원대상: 생산자들이 중심으로 닭계열화 사
 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자 또는 축산법에 의거
 등록된 기존종계장 중에서 평사로 개축 또는 신축
 을 희망하는 사업자

○ 사업기간: '92년(1년간)

- 사업비 : 20억원
- 지원내역

사업량	단 가	사업비	사 업 비 내 역		
			용 자	자 담	계
개소 10	백만원 200	백만원 2,000	1,400 (70%)	600 (30)	2,000 (100)

- 재원 : 축산진흥기금
- 용자기간 및 금리 : 3년거치 7년상환, 연리5% (연1회 후취)

④ 세부실시요령

추진내용	주관(협조)
<p>㉞ 지원대상자 선정 : 농림수산부장관</p> <p>㉟ 선정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신청자는 종계 20천수이상 사육규모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시설부지가 확보되어 있어야 함. ○ 생산자들로 구성되어 추진하고 있는 계열화 사업자에 우선지원 <p>㊱ 선정절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지사는 생산자중심의 양계계열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자와 시설이 낙후되어 생산성이 저하되고 있는 기존 종계장 중에서 시설개선을 희망하는 사업자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농림수산부에 지원 신청 -은행감독원의 여신규제 대상자가 아닌 사업자 <p>㊲ 자금의 용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된 자금은 종계사의 신축(증축, 개축포함) 내부자동화시설, 분뇨수거 및 처리시설비에만 사용 ○ 부지구입비, 부대시설비 및 운영자금으로는 사용할 수 없음. <p>㊳ 용자조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자한도 : 사업자당 140백만원이내 ○ 용자비율 : 시설비의 70%이내 ○ 용자취급기관 : 축협중앙회 ○ 용자대상자 : 농림수산부장관이 선정한 종계장시설 개선 대상자 	<p>농림수산부, 도지사, 축협중앙회</p>

(사) 부화장 시설지원

- ① 목적
 - 우량병아리 생산보급으로 양계산물 생산성 향상 및 농가소득 증대
 - 병아리 수급조절로 양계산물 가격안정 도모

- ② 추진방향
 - 부화장 시설 노후화에 따른 시설개선으로 부화장 경영합리화 유도
 - 부화장 시설 자동화 설치도 우량병아리 생산공급 및 병아리 생산비 절감 유도

- ③ 사업계획
 - 사업주체 : 농림수산부
 - 사업량 : 10개소
 - 지원대상 : 생산자들이 중심으로 닭계열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자, 4만수이상의 종계장을 경영하고 있는자 또는 기존부화장 경영자중 시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자
 - 사업기간 : '92년(1년간)
 - 사업비 : 50억원
 - 지원내역

사업량	단 가	사업비	사 업 비 내 역		
			용 자	자 담	계
개소 10	백만원 500	백만원 5,000	3,500 (70%)	1,500 (30)	5,000 (100)

- 재원 : 축산진흥기금
- 용자기간 및 금리 : 3년거치 7년상환, 연리5% (연1회후취)

④ 세부실시요령

추진내용	주관(협조)
<p>㉞ 지원대상자 선정 : 농림수산부장관</p> <p>㉟ 선정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신청자는 주당 15만수이상 부화 규모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시설부지가 확보되어 있어야 함. ○ 생산자들로 구성되어 추진하고 있는 계열화 사업자에 우선지원 <p>㊱ 선정절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지사는 생산자 중심의 계열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자와 부화장 시 	<p>농림수산부, 도지사, 축협중앙회</p>

추진내용	주관(협조)
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자의 계획서를 검토한 후 농림수산부에 지원신청 -은행감독원의 여신규제 대상자가 아닌 사업자 ㉔ 자금의 용도 ○지원된 자금은 부화장 건축비, 부화기 및 내부시설비에만 사용 ○부지구입비, 부대시설비 및 운영자금으로는 사용할 수 없음. ㉕ 용자조건 ○용자한도 : 사업자당 350백만원이내 ○용자비율 : 시설비의 70%이내 ○용자취급기관 : 축협중앙회 ○용자대상자 : 농림수산부장관이 선정한 부화장 시설지원 대상자	

나. 가축개량

(1) 닭능력검정사업

(가) 목적

- 종계자질개량 및 능력향상
- 우량종계 도입유도 및 양계농가에 계종선택지

표 제공

- 양계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나) 기본방침

- 검정요원의 전문화
- 검정방법의 공정화
- 검정결과와 공표

(다) 사업계획

- 사업주체 : 대한양계협회
- 대 상 : 대한양계협회 능력검정소
- 사업기간 : '66-영구
- 지원내역

(단위 : 천원)

	사업량 단 가	보 조				용 자 (축진기금)	자 담	합 계
		국 비	지 방 비	축진기금	소 계			
검정사업비	18천수			50,000	50,000		94,667	144,667
계분건조시설	1식			30,000	30,000			30,000
계				80,000	80,000		94,667	174,667

○사업량

검정소검정	일반검정
18천수(산란6, 육용12)	도입 및 국내분양 총계

3. 축산물 유통과

가. 축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

(1) 산지가격 안정

○돼지고기

- 생산자단체 중심의 수급조절
- 축협 및 한냉(주)의 수급조절자금 지원
- 닭고기, 계란
- 생산자단체(축협조합), 계열업체 및 비축업체의 수급조절자금 지원

○자조금 지원

- 생산자단체(양돈, 양계단체)의 자율적인 판로 확대,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자조금 지원

(2) 수출확대 및 비축기능 강화

- 돼지고기 : 수출잔여육 처리자금 지원
- 닭고기·계란 : 닭고기 비축시설 자금지원

(3) 홍보기능 강화

- 홍보주체 : 축협중앙회, 양돈협회, 양계협회

(4) 닭고기, 계란 수급조절사업

① 목적

○양계산물(닭고기, 계란)의 수급 및 가격안정으로 양축경영안정 도모

② 기본방침

○민간주도의 자율적인 수급조절 기능 부여

③ 사업계획

○사업주체 : 시·도지사

○대상 : 생산자단체, 계열화 사업주체 및 한냉

(주) 등 비축시설 보유업체

○사업기간 : '92. 1~12

○사업비 : 5,500백만원

○세부 사업별 지원내역

	사업량	단 가	사 업 별			
			보조	용자 (축진 기금)	자담	합계
양계 산물수급조절	천수	원/수	백만원			
육계	2,643	1,400	-	3,700	-	3,700
계란	백만개	원/개	-	1,800	-	1,800
계				5,500		5,500

○용자조건 : 연리 8%(조합 3%), 용자기간 : 1년

(5) 자조금 지원

○목적

-생산자단체의 자율적인 사육 및 수급조절로 축산물 가격안정 도모

○기본방향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자조금 보조

○사업계획

-사업주체 : 생산자 단체

-대 상 : 생산자 단체(양돈, 양계)

-사업기간 : '92.1~12

-사업비 : 600백만원(자금보조 300백만원, 자담

600)

-세부 사업별 지원내역

	보 조			용자	자담	합계
	국고	축진 기금	계			
자보금지원	백만원					
-돼지	-	150	150	-	300	450
-닭	-	150	150	-	300	450
계		300	300		600	900

-용자조건 : 보조

나. 유통시설 확충

(1) 닭고기 비축시설 지원사업

○목적

닭고기 비축시설 확충으로 원활한 수급 및 가격안정 추진

○기본방침

-닭고기 비축시설 확충

-수급조절의 기능 강화를 통한 수급 및 가격안정

○사업계획

-사업주체 : 축협중앙회

-대상 : 서울 경기 양계조합

-사업기간 : '92. 1~12

-사업비 : 1,000백만원(용자 500만원, 자담 500)

-세부사업별 지원내역

	사업량	단 가	사 업 량			
			보 조	용자 (축진 기금)	자 담	합 계
닭 고 기 비축시설	개소 1 (200평)	천원/평 5,000	백만원 -	500	500	1,000

-용자조건 : 연리 3%, 3년거치 5년균분상환

(2) 계란, 저온 저장시설

-계란의 저장·계획 출하로 수급 및 가격등락 조절 기능 강화

-계란 집산지와 연계 비축시설 설치로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

○사업계획

-사업주관: 축협중앙회

-대상자: 양계조합

-사업량: 1개소

-사업기간: '92.1~'92.12말(1년간)

-사업지역: 중부권

-사업규모 및 내역

	계	부지	건물	냉장시설	차량
사업량		1,000평	400평	40마력	7대
사업비	700만원	180	400	40	80

•부지 및 시설규모 등은 형편에 따라 일부 증감조정할 수 있음

•차량: 수송차량 및 지게차

(3) 육가공장 시설자금 지원

○목적

-축산물(돼지고기, 닭고기) 수입개방과 육가공품 수요증가에 대비한 육가공 산업육성

○기본방향

-육가공품 수요증가에 대처한 시설확충 및 근대화

-축산물 수출과 연계한 육가공산업 육성

-육가공 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

○사업계획

-사업주체: 시·도지사

-대상: 육가공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고자 하는 업체(수출업체 우선 지원)

-사업기간: '92.1~12

-사업비: 14,000백만원(용자 7,000백만원, 자담 7,000)

-세부사업별 지원내역

	사업량	단가	사업비		
			보조	용자 (추진 자금)	자담 합계
육가공장시설자금지원	개소	백만원	백만원		
육가공장 시설	6	2,000	-	6,000	6,000 12,000
계육가공 시설	1	2,000	-	1,000	1,000 2,000
계	7		-	7,000	7,000 14,000

-용자조건: 연리 8%(조합 및 한랭(주) 3%), 5년거치 5년상환

(4) 계란 집하장 설치

○목적

-계란의 유통구조 개선으로 농가의 소득 증대

-계란의 수급 조절에 의한 가격안정 도모

-계란의 상품성 제고로 소비확대에 기여

○기본방침

-수입 자유화에 대비한 계란의 등급별 포장화로 상품성 제고

-생산농가의 공동출하에 의한 시장교섭 능력 제고

-상인들의 횡포 방지로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

-비축사업 병행 추진으로 수급조절 기능 강화

○사업계획

-사업주체: 시·도 및 축협중앙회

-대상: 축협조합(양계조합) 및 산란계 계열화 시행 업체·산란계 계열화 업체는 기존의 사육농가와 계약을 해야 하며, 상시 사육수수가 50만수이상 되어야 함.

-사업기간: '92. 1~12

-사업규모 및 시설내역(개소당)

부지	매입	건물	차량	선별기
평			대	대
500		200	3	2
백만원				
110		160	30	200

※부지 및 시설 규모, 사업비 등 세부사업계획은 사업자 형편에 따라 일부 조정할 수 있음.

(5) 축산물 종합판매장 설치

- 목적
 -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으로 축산물가격안정 도모
 - 생산자단체가 소비자 시장 개입으로 공정거래 형성
 - 양축 농가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 보호
- 기본방침
 - 축산물 종합 판매장을 연차적으로 확대 설치
 - 산지와 대도시 소비지를 직접 연계하여 유통 단계 축소
- 사업계획
 - 사업주체 : 축협중앙회
 - 협 조 : 시·도지사
 - 사업대상 : 축협(업종 조합 및 비회원조합 포함)
 - 사업기간 : '92.1~12월
 - 사업규모 및 내역

사업량	개 소 당 규 모			비 고
	관 매 장	냉동·냉장	차 량	
개소	평	평	대	
30	100	10	1	

※사업지역의 여건을 감안 시설규모의 일부 조정 가능

(6) 계란 조리기 개발보급사업

- 목적
 - 계란의 소비 확대를 통한 수급 및 가격안정 도모
- 기본방침
 - 계란 자동판매기 제작 시설 지원
 - 계란 소비 형태의 다양화로 계란 소비확대
- 사업계획
 - 목적

- 계란의 수급조절에 의한 가격안정 도모
-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수급 불균형 해소
- 계란의 장기보존 및 신선도 유지로 상품성 제고
- 기본방침
 - 계란의 과잉생산 및 비수기에 비축으로 수급 조절 기능 수행
 - 사업주체 : 시·도지사
 - 대상 : 계란조리기 제작 업체
 - 사업기간 : '92.1~12
 - 사업비 : 1,000백만원(용자 500백만원, 자담 500)
 - 세부사업별 지원내역

	사업량	사 업 비			
		보조	용자 (추진기금)	자담	합계
계란조리기 개발보급 사업	개소 1	백만원 -	500	500	1,000

-용자조건 : 연리 8%, 5년거치 5년상환

4. 가축위생과

가. 축산물 위생

(1) 축산물내 유해잔류물질 검사사업

(가) 축산물내 유해잔류물질검사

- ① 목적
 - 국내산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통한 축산업 발전 및 공중보건향상 도모
 -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기반 정착도모로 양축농가 소득보호
 - 잔류원인 분석을 통한 유해잔류물질 방지대책 강구·추진
 - 국내산 육류에 대한 신뢰도 및 품질경쟁력 제고
- ② 추진방향
 - 축산물내 항생제, 합성항균제 등 유해잔류물

질 검사 강화

—동 검사결과 잔류물질 검출시 잔류방지 제도 및 규제강화 병행 등 특별관리 실시

○유해잔류물질 검사실시 재료비 및 검사장비 등 검사체제 구축 지원

③추진계획

○실시기관 : 시·도 가축위생시험소(서울시는 보건환경연구원)

○사업기간 : '92.1~12월

○사업량 : 45,000건

소	돼지	닭	계
10,000건	20,000	15,000	45,000

○검사대상

—대상품목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대상물질 : 항생물질 및 합성항균제(설파제)

등 유해잔류물질

○검사방법

—축산물 작업장에서 채취된 수축의 근육시료에 대해 유해물질 잔류여부 판정(스크리닝 검사: EEC 4—plate method 적용 실시) > 후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보건사회부 고시) 중 “식육중 잔류물질 허용기준 및 축산식품중 잔류물질시험법”에 의거 정량분석 등 검사 실시

○검사결과 조치

—검사결과 유해잔류물질 검출시 해당가축 출하 농장에 대한 잔류방지 제도 및 규제검사 강화 등 특별관리, 허용기준 초과육에 대한 폐기처분 등 제재 조치

• 유해물질 잔류여부 검사(1차 검사)결과 잔류(양성)판정시 : 해당가축 출하농장 추적에 의한 특별관리 실시 → 가축 사양관리 실태점검 등 잔류원인 분석을 통한 농가제도 및 가축 재출하시 2차 검사 실시

• 2차 검사 : 특별관리 대상농장의 재출하 가축에 대한 규제검사(검사완료시까지 출고보유 등 유통에 제한) 실시

—잔류검사 결과를 분석, 유해잔류물질 방지대책 강구·추진

○사업비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비고
		국비	지방비	계	
유해잔류물질검사 검사 재료비	45,000 건	45,000 천원 (50%)	45,000 (50%)	90,000 (100%)	

(2) 위생 도축장 유통 정착

(가) 목적

○도계장 시설 현대화로 위생 도계육 공급 및 계육 유통구조 개선

○노계처리 도계시설 확충으로 노계의 적기 도태를 유도하여 양계산업 육성

○도계과정에서 발생하는 익모, 내장 등 부산물의 적정처리로 환경공해 방지

(나) 기본 방침

① 위생 도계육 유통지역 확대지정

○닭, 오리에 대한 축산물위생처리법 적용 대상 지역 지정 및 작업장 설치규정(농림수산부 고시 제90-10호, '90.3.12)에 의거 유통지역 확대 방안 강구

—닭 : 전국을 유통지역으로 고시하는 방안

—오리 : 시·도지사의 의견을 검토, 유통지역 고시 확대

② 도계육 반출 및 유통질서 확립

○축산물위생처리법 규정에 의한 도계장에 한하여 타시·도 냉장(동) 반출 허용

○식육운반차량으로 도계육 운송

○반출시 반출통보서 및 검사증명서 발급 철저

○도살·해체 수수료 부정 징수 및 탈세 행위 지도 감독 철저

③ 영세·노후한 도계장의 통·폐합 정비 유도로 도계 경영 활성화

○도계장 신규 설치 허가시 농림수산부와 사전

협의

○계열화 및 노계전문도계장을 제외한 신규 도계장 허가 제한

④ 주문도계 및 자가도계체제 전환으로 검사업무 강화

⑤ 도계장 경영 및 도계육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자금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및 추천 서식은 '92.2월중 시달 예정

(다) 자금지원계획

① 사업주체 : 시·도지사

② 지원대상 : 도계시설(가공, 비축시설 포함) 개선, 노계처리시설 및 도계 부산물처리설비를 하고자 하는 도계장 경영자

③ 지원내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수량	지원단가	사업비	재원별			용자비율
				계	축진기금	자담	
도계장시설현대화	개소 5	500	2,500	5,000	2,500	2,500	용자50%
노계전문도계시설	1	1,000	1,000	2,000	1,000	1,000	"
도계부산물처리시설							
개별 시설	10	100	1,000	2,000	1,000	1,000	"
공동 시설	2	1,000	2,000	4,000	2,000	2,000	"
계	18		6,500	13,000	6,500	6,500	

④ 용자조건 : 5년거치, 5년 균분 상환(연리 8%)

(3) 축산폐수 처리사업 추진계획

(가) 목적

○양축농가와 정착촌의 정화시설비 지원으로 축산의욕 고취

○가축분뇨의 방류 방지로 환경 및 수질오염 방지

(나) 기본방침

○법적 규제 이하농가 간이정화시설(간이저장조, 톱밥발효돈사, 건조장 등) 자금 보조 및 용자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중 신고대상농가의 정화시설(저장액비화, 톱밥발효돈사, 건조장 등) 자금용자

○지역축협 등 축산단체에 분뇨운반장비, 톱밥제조시설 및 공동저장탱크 시설비 보조

○양축농가에 퇴비처리장비 및 비료화설비 자금용자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계분비료공장, 축분발효시설) 지원

○가축분뇨의 퇴비화로 지력증진 및 농가 소득증대

나. 가축방역

(1) 가축혈청검사사업

(가) 목적 및 필요성

○가축전염병 조기발견 및 신속한 방역대책수립을 목적으로 시·도 가축위생시험소에서 가축의 혈청을 검사하여 면역항체가와 질병감염여부, 조기 검색 및 질병발생동향을 파악하고

○검사결과에 따라 예방접종 적기실시지도 및 질병방제와 예방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적기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양축농가의 자율방역을 지원하기 위함

(나) 사업시행기관

○가축위생연구소 : 진단액 등 생산공급 및 기술지도

○가축위생시험소 : 혈청검사실시 및 결과통보와 양축농가 지도

(다) 검사대상질병 : 11종

○닭 : 뉴캐슬병 · 산란저하증 · 감보로병 · 전염성 기관지염 · 추백리 · 마이코프라스마병(6종)

○돼지 : 돼지콜레라 · 단독 · 위축성비염(3종)

○소 : Q열, 우간질(2종)

(2) 계군혈청검사사업 지원

(단위 : 천원)

구 분	국 비	자 부 담
장 비 구 입	100,000	-
실 험 실 설 치	-	30,000
인 건 비	-	26,028
관 리 비	-	24,972
예 비 비	-	4,000
계	100,000	85,000

(가) 목적 및 필요성

○ 닭 전염병에 대한 혈청검사로 면역항체가와 질병감염여부, 질병발생동향 등을 파악하여 결과를 통보함으로써 양계농가 자율적으로 방역토록 하여 경제적 손실을 사전 예방

(나) 사업수행기관

- 대한양계협회
- 기술지도기관 : 가축위생연구소

(다) 사업기간 : '92.4~12월

(라) 검사대상

○ 등록된 종계장(200개소)에서 사육하고 있는 종계

(마) 대상질병 : 6종

○ 추백리 · 마이코프라즈마병 · 뉴캐슬병 · 산란저하증 · 닭전염성기관지염 · 감보로병

(바) 사업량 : 5,000수

(연검사건수 : 30,000건)

(사) 사업비 : 185,000천원

(아) 실시요령

- 대한양계협회는 가축위생연구소에서 항원을 배정받아 사용할 것
- 종계장사육계를 4개군으로 구분하여 1군당 10수를 채혈하여 검사하고, 연 2회이상 실시할 것
- 협회는 혈청검사성적을 분석하여 면역역가, 질병감염여부, 백신접종적기여부, 접종방법의 개선등 방역에 필요한 조치사항을 해당종계장에 통보
- 협회 세부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전 보고하고 '91.12.20까지 사업결과를 보고할 것
- 가축위생연구소는 동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기술지도는 물론, 지도 · 감독을 철저히 할 것.

완 전 식 품 계 란

◇ 취급은 이렇게 ◇

- 케이지의 알받이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한다.
- 플라스틱 난좌를 사용할 때는 항상 깨끗하게 하고 오염된 난좌는 반드시 세척, 건조한 후 사용한다.
- 오물이 묻은 계란, 파란, 혈란 등은 선별하여 별도 취급해 계란의 상품성을 높인다.

